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0월 8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7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미래교육돌봄국장 박 은 희

나. 제안이유

- 저출생 극복과 돌봄 수요에 맞춰 지역에 분산된 돌봄 시설을 센터 내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 보편적 가족서비스 및 원스톱 돌봄 서비스 제공

다. 주요내용

【취득재산】

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

- 위 치 : 구미시 산책길 73

- 규 모 : 지상 2개층 증축(3~4층), 연면적 768㎡ / 부지 2,393㎡
 - ※ 기존 2층 + 2층 증축 → 업무공간 재배치(1~2층 돌봄 기능, 3~4층 센터 기능)
- 사업기간 : 2025 ~ 2026년
- 총사업비 : 3,000백만원(지특 1,500 도비 450 시비 1,050)
 - ※ 사업비 산출내역
 - 증축(증축, 구조 및 내진보강, 기계, 전기, 소방시설 등) : 2,850백만원
 - 설계, 감리 등 : 150백만원
- 추진현황
 - 지방재정투자심사 : '23. 9월
 - 경북도 및 여가부 방문 예산 지원 건의 : '24. 2월
 - '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 '24. 3월
 - '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실무심사 : '24. 3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4. 7월
- 향후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 '24. 10월
 - 설계 및 경제성 검토 : '25. 3 ~ 9월
 - 공사원가 심사 의뢰 및 입찰 등 : '25. 10 ~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6. 3 ~ 12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1	768	3,000
	1.매입	토지 건물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768 3,000

취득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사 유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소계			768	3,000				
취득	건물	산책길 73	768	3,000	2026년	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	구미시	증축

위 치 도

□ 구미시가족센터 증축 건립

○ 소재지 : 구미시 산책길 73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검토 결과,

- 구미시가족센터는 2023년도 기준으로 연간 85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108,117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센터 통합운영 사업 확대와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센터를 증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당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가족센터 이용자 및 인근 기관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할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내하고, 공사기간동안 가족센터 운영,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구미시가족센터는 위치상 여러 공공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이 혼잡하고 증축에 따른 서비스의 한계가 있음.
- 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 전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증축이나 신축을 검토해야 하고, 강동지역에 돌봄 수요가 많음에도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부분임. 증축보다는 정확한 수요 조사를 근거로 한 제2의 센터 건립이 바람직함.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